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41
----------	-------

발의연월일 : 2026. 8. 11.

발 의 자 : 이용선 · 박용갑 · 김성희
박지혜 · 박해철 · 권향엽
황명선 · 김승원 · 문금주
진성준 · 윤건영 · 김영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물류창고업 등록 시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에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에서 알 수 있듯이 물류창고는 적층식 랙 구조와 화재에 취약한 물품을 대량으로 보관하고 있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는바 물류창고의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체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물류창고업자가 등록기관의 장에게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제출받은 화재안전 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물류창고 화재예방에 기여하러

는 것임(안 제21조의4 신설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10까지를 각각 제21조의5부터 제21조의11까지로 하고, 제2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1조의6(중전의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의4제1항”을 “제21조의5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4제6항”을 “제21조의5제6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의4제8항”을 “제21조의5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4제4항”을 “제21조의5제4항”으로 하며, 제21조의7(중전의 제21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1조의4제2항”을 “제21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1조의4제8항”을 “제21조의5제8항”으로 하며, 제21조의9(중전의 제21조의8)제1항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7”을 “제21조의8”로 하며, 제21조의10(중전의 제21조의9)제1항 중 “제21조의10”을 “제21조의11”로 한다.

제21조의4(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 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는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계획(이하 “화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관리계획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해당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의 장은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장과 협조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류창고업자에게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물류창고업자는 지체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내용·신고·보완요구 및 이행현황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제1항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21조의10”을 각각 “제21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9”를 “제21조의10”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제21조의10”을 각각 “제21조의11”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21조의9제1항”을 “제21조의10제1항”으로 한다.

1의3. 제21조의4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수리 및 이행현황 점검

1의2. 제21조의4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수리 및 이행현황 점검

제65조제1항제4호 중 “제21조의10”을 “제21조의11”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의4제5항”을 “제21조의5제5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중 “제21조의10”을 “제21조의1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1조의5제2항”을 “제21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4제5항의 후단을 위반하여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1조의4(물류창고 화재안전관리계획) ① 제21조의2에 따라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자는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에 관한 계획(이하 “화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등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재안전관리계획에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u> <u>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해당 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u>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 화재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여 등록기관의 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등록기관의 장은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이행현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소방서장과 협조하여 점검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물류창고에서의 화재 예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 발견되는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류창고업자에게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화재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물류창고업자는 지체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등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화재안전관리계획 의 내용·신고·보완요구 및 이행현황 점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 증 등) (생략)	제21조의5(스마트물류센터의 인 증 등) (현행 제21조의4와 같 음)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① 국토 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1항 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 2. (생략) 3. 제21조의4제6항에 따른 점검 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 상 거부한 경우 4.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 우 5. (생략) ② 스마트물류센터의 소유자	제21조의6(인증의 취소) ① ---- -----제21조의5제1항 ----- ----- -----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의5제6항----- ----- ----- 4. 제21조의5제8항----- ----- -- 5. (현행과 같음) ② -----

또는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u>제21조의4</u> <u>제4항</u> 에 따른 인증서를 반납하 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 여야 한다.	----- ----- <u>제21조의5</u> <u>제4항</u> ----- ----- -----.
<u>제21조의6</u>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21조의4제</u> <u>2항</u> 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 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u>제21조의4제8항</u> 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 6. (생략)	<u>제21조의7</u>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 <u>제21조의5제</u> <u>2항</u> ----- ----- ----- ----- -----. ----- -----. 1. (현행과 같음) 2. <u>제21조의5제8항</u> ----- ----- ----- 3. ~ 6. (현행과 같음)
<u>제21조의7</u> (재정지원 등) (생략)	<u>제21조의8</u> (재정지원 등) (현행 제 21조의7과 같음)
<u>제21조의8</u>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u>제21조의7</u> 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은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	<u>제21조의9</u> (보조금 등의 사용 등) ① <u>제21조의8</u> ----- ----- -----

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1조의7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 등을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21조의9(과징금) ①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물류창고업자가 제21조의10에 따라 준용하는 제17조제1항 각 호(제1호·제4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21조의10(준용규정) (생략)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

-----.

② -----

-----제21조의8-----

-----.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0(과징금) ① -----

-----제21조의11-----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준용규정) (현행 제21조의10과 같음)

제64조(권한의 위임) ① -----

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에서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1의2. (생략)

<신설>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여부 통지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폐업 신고의 접수 및 법인해산 신고의 접수

-----.

-----.

1.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제21조의4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계획의 신고수리 및 이행현황 점검

2. 제21조의10-----

3. 제21조의11-----

4. 제21조의11-----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 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6. ~ 16. (생략)

② (생략)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항만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무역항 중 국가관리무역항 구역 안의 물류창고를 경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생략)

<신설>

2.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 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

5. 제21조의11-----

6. ~ 1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21조의4에 따른 화재안

전관리계획의 신고수리 및 이

행현황 점검

2. 제21조의10-----

3. 제21조의11-----

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 -----
4.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 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휴 업·폐업의 신고수리 및 제21 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15조 제2항에 따른 법인해산의 신 고수리	4. 제21조의11----- ----- -----제21 조의11----- ----- -----
5.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제 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 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 정지	5. 제21조의11----- ----- ----- ---
6. ~ 9. (생략)	6. ~ 9. (현행과 같음)
④·⑤ (생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제2호에 따라 과징금 의 부과·징수권한이 시·도지 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제21조 의9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기 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자에 대 하여는 시·도지사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행정제재·부 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징수한다.	⑥ ----- ----- -----제21조 의10제1항----- ----- ----- ----- ----- ----- -----.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제65조(벌칙) ① ----- -----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6조(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4의2. ~ 7. (생략)

② 제21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과태료) <신설>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21조의11-----

4의2. ~ 7. (현행과 같음)

② 제21조의5제5항-----

-----.

제6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u>제21조의10</u>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u>제21조의5제2항</u>을 위반하여 인증마크를 계속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2. <u>제21조의4제3항</u>을 위반하여 <u>화재안전관리계획</u>을 보완하지 아니한 자 3. <u>제21조의4제5항</u>의 후단을 위반하여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③ ----- ----- -----. 1. -----<u>제21조의11</u>----- ----- ----- ----- 2. <u>제21조의6제2항</u>----- ----- ④ -----<u>제3항</u>----- ----- ----- ----- -----.
---	---